**커피자동판매기 판매 및 운영위탁 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회사”)와 ○○○(이하 “계약자”)는 “회사”가 “계약자”에게 커피자동판매기를 판매하고 판매된 커피자동판매기를 “회사”가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커피자동판매기 판매 및 운영위탁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계약자”에게 커피자동판매기(이하 “기기”)를 판매하여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 후 “회사”가 “계약자”의 위탁을 받아 기기를 운영함에 있어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당사자의 역할**

1. “회사”는 기기의 매도인으로서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기를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기기의 매수인으로서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대금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계약자”는 기기의 운영을 “회사”에게 위탁하며 “회사”는 기기의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기기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을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에게 분배합니다.

**[제3조] 매매대금**

1. “계약자”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 매매대금은 금[ ]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합니다.

2. “계약자”는 다음 일정에 따라 제1항의 매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  |  |
| --- | --- | --- |
| 구분 | 지급시기 | 매매대금(부가가치세별도) |
| 계약금 |  |  |
| 잔금 |  |  |
| 합계 |  |  |

3. “계약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회사”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기기의 인도와 설치 등**

1. “회사”는 잔금 지급일 또는 당사자간 별도 합의된 날짜에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기기를 인도, 설치합니다. 기기의 설치는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수도 배관 작업, 인터넷 회선 연결 작업, 전기 배선 작업, 기기 작동 점검 작업이 포함됩니다.

2. “계약자”는 인도일 이전에 기기를 설치할 장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문서로 통지하되 기기 설치장소는 전기, 인터넷, 수도배관 작업이 가능하며 외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장소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부적절한 장소 지정으로 인하여 기기의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발생하거나 설치, 관리상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기기의 운송,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러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부담하게 되는 설치 비용에 관한 비용명세서를 교부합니다.

가. 최초 운송 및 설치 완료 후 “계약자” 요청에 따라 기기를 이전 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나. 통상적인 설치작업 외에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물에 대한 시공(벽면 타공 작업 등)등 추가작업이 필요하여 발생하는 비용

4. 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비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가. 설치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인건비 총액

나. 설치 작업에 직접 투입되는 도구 및 소모품 등 유형자산의 품명, 모델명, 수량, 구입처

다. 기타 설치 작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

5. “회사”는 기기의 운송 및 설치를·완료한 후 “계약자”에게 기기 사용 및 관리 관련 주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6. “계약자”는 기기설치 완료시 “회사”가 제시하는 설치완료 확인서에 “계약자”의 서명을 하여 “회사”에 교부하며, 설치완료 확인서가 교부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기에 대한 위험이 “계약자”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설치완료 이후 확인된 기기의 하자 등이 그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한 것이거나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회사”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조] 기기의 운영권 및 수익분배**

1. “회사”는 기기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기기를 통하여 판매된 음료의 판매수익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회사”는 기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음료(재료)를 자신의 책임으로 조달, 공급합니다.

3. “회사”는 익월 5영업일(“회사”의 임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을 의미함, 이하 같음)까지 전월의 음료 판매내역 및 판매수익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며, 월 판매수익 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 [ ]영업일까지 “계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3. 분배금 정산에 대하여 전산누락, 오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와 “계약자”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차기 분배금 지급시 증감 또는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기기의 유지, 보수**

1. “회사”는 정기적으로 기기를 점검하고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계약자”는 “회사”의 임직원이 기기의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기기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품비 일반적인 관리 및 수리비 등은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부담합니다.

4. “계약자”는 기기의 고장, 파손 기타 정상적인 작동에 지장이 발생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7조 [기기의 철거 등]**

1. 최초 설치 후 “계약자”의 요청에 따른 기기 철거, 이동 및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운영기간 개시 후 제15조 제3항에 명시된 사유로 “회사”가 기기를 재매수하는 경우 기기를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제15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분담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거비 등을 부담하게 될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부담하게 되는 철거 비용에 관한 비용명세서를 교부합니다. 이 비용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5조 제4항에 따릅니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1. “회사” 또는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제품 ·기술·시장·경영 및 기타 관련 정보 및 본 계약과 관련된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제공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계약자”는 기기의 구조, 기술, 디자인 또는 이와 관련된 “회사”의 권리(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도용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회사” 또는 “계약자”는 본 계약이 해지, 해제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또는 “계약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1. “회사” 또는 “계약자”는 상대방이 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위 기간 동안 시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계약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파산 또는 회생개시 절차가 시작된 경우

나.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가 시작된 경우

다.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가 발생하거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라. 해당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회사” 또는 “계약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거나,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본조에도 불구하고 기기의 대금지급과 인도가 완료된 경우 기기의 매매에 대하여는 해지 또는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제10조 [손해배상]**

“회사” 또는 “계약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등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불가항력]**

① “회사”와 “계약자”는 전쟁, 폭동, 내란, 지진 또는 해일 등 천재지변,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과 같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계약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계약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 또는 “계약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상호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관련 법규의 준수]**

“회사”와 “계약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감독규정·고시 등(이하 “관련 법규”라고 한다)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로 하되, 상호 합의에 따라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해석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와 “계약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별도로 작성한 합의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합의서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변경은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변경계약서의 내용 중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은 본 계약에 우선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15조 [특약사항]**

1. “계약자”는 냉장설비가 이용되는 기기의 특성상 기기의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는 자격이 있는 업체를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기를 소유하는 동안 “회사”에 기기의 전속적인 운영권을 보장하기로 합니다.

2. “계약자”가 기기를 매매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전항에 따른 “회사”의 운영권을 보장하는 형태로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기기를 통한 음료판매가 개시된 이후 [ ]개월이 경과하도록 최근 2개월간 기기를 통한 일 평균 판매량(잔수)가 연속하여 25잔 이하인 경우 “회사”는 기기를 재매수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4. 전항에 따라 “회사”가 기기를 재매수하는 경우 기기의 재매수 가격 및 철거비용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재매수 가격

기기의 최초 매매가격 \* (기기의 내용연수 – 경과연수)/기기의 내용연수

- 철거비용

“계약자”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 ]년 내에 재매수하는 경우 : 회사 [ ]%, 계약자 [ ]%

“계약자”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 ]년 후에 재매수하는 경우 : 회사 [ ]%, 계약자 [ ]%

**제16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계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회사”와 “계약자”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 ]년 [ ]월 [ ]일

“회사” “계약자”